

#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안 번호	13233
----------	-------

제안연월일 : 2021. 11. .

제안자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 1. 대안의 제안경위

가. 2021년 1월 21일 김경만의원이 대표발의한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과 2021년 2월 2일 이철규의원이 대표발의한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제385회 국회(임시회) 제1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1. 3. 8.)에 각각 상정하여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고 대체토론을 거쳐 산업통상자원특허소위원회에 회부하였음.

나. 제385회 국회(임시회) 제2차 산업통상자원특허소위원회(2021. 3. 16.)에서 위 2건의 법률안을 심사한 결과, 각각의 법률안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각 법률안의 내용을 통합·조정하여 위원회의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함.

다. 제385회 국회(임시회) 제2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21. 3. 18.)에서 산업통상자원특허소위원회가 심사보고 한 대로 2건의 법률안을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산업통상자원특허소위원회가 마련한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의결함.

## 2. 대안의 제안이유

4차산업혁명, 인공지능 등 디지털시대의 근간인 데이터의 중요성이 날로 커지고 있고 빅데이터를 활용하여 경제적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있으나, 데이터를 보호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이 미비하여 양질의 데이터가 원활하게 이용·유통되는 것을 저해하고 있음.

또한, 한류의 영향력이 확대되고 유명인의 초상·성명 등을 사용하는 제품·서비스가 다양해지면서 관련 불법 상품의 제작·판매 행위도 증가하고 있으나, 유명인 등의 재산적 손실이나 소비자에게 발생한 피해를 적절히 보호하는 데 한계가 있는 실정임.

이에 일각에서는 데이터 또는 유명인의 초상·성명 등에 독자적 권리를 부여하여 보호하자는 논의가 제기되어 왔으나, 데이터의 경우 「민법」상 물건에 해당하지 않아 소유권이 인정되기 어렵고, 초상 등의 경우도 일신전속적 성격상 권리의 양도·상속이 불가능하여 상표권과 권리 충돌이 발생하는 등 그 특성상 복잡한 논란이나 부작용이 야기될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한편, 최근 대법원은 타인이 영업 목적으로 공개한 데이터와 유명인의 초상·성명 등이 지닌 경제적 가치를 ‘상당한 투자와 노력의 성과’로 인정하여 이를 무단사용한 행위를 부정경쟁행위로 제재한 바 있음. 다만, 이는 이 법의 보충적 일반조항에 근거한 것으로,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형태의 무단사용행위를 적절히 제재하기에는 한계가 있음.

따라서 데이터를 부정하게 사용하는 행위와 유명인의 초상·성명 등 인적 식별표지를 무단사용하는 행위를 각각 부정경쟁행위의 유형으로 명확히 규정하여 제재함으로써 건전한 거래 질서를 확립하고, 부당한 피해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려는 것임.

### 3. 대안의 주요내용

가. 이 법에서 보호하는 데이터를 “「데이터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데이터 중 업으로서 특정인 또는 특정 다수에게 제공되는 것으로, 전자적 방법으로 상당량 축적·관리되고 있으며, 비밀로서 관리되고 있지 않은 기술상 또는 영업상의 정보”로 정의하고, 데이터를 부정하게 사용하는 행위를 부정경쟁행위의 유형으로 신설하면서, 구체적인 금지행위로 다음의 4가지 행위유형을 규정함 (안 제2조제1호카목 신설).

1) 접근권한이 없는 자가 데이터를 부정하게 취득하거나 그 취득

한 데이터를 사용·공개하는 행위

2) 접근권한이 있는 자가 부정한 목적으로 데이터를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사용·공개하는 행위

3) 1) 또는 2)가 개입된 사실을 알고 데이터를 취득하거나 그 취득한 데이터를 사용·공개하는 행위

4) 데이터의 기술적 보호조치를 무력화하는 행위

나. 유명인의 초상·성명 등 타인을 식별할 수 있는 표지를 공정한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질서에 반하는 방법으로 자신의 영업을 위하여 무단으로 사용함으로써 타인의 경제적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를 부정경쟁행위의 유형으로 신설함(안 제2조제1호 타목 신설).

다. 데이터 내에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이 우선 적용되도록 하는 등 다른 법률과의 관계를 명확히 규정함(안 제15조제1항 및 제2항).

#### 4.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조승래의원이 대표발의한 「데이터 기본법안」(의안번호 제6182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카목을 파목으로 하고, 같은 호에 카목 및 타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카. 데이터(「데이터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데이터 중 업으로서 특정인 또는 특정 다수에게 제공되는 것으로, 전자적 방법으로 상당량 축적·관리되고 있으며, 비밀로서 관리되고 있지 않은 기술상 또는 영업상의 정보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부정하게 사용하는 행위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 1) 접근권한이 없는 자가 절취·기망·부정접속, 그 밖의 부정한 수단으로 데이터를 취득하거나 그 취득한 데이터를 사용·공개하는 행위
- 2) 데이터 보유자와의 계약관계 등에 따라 데이터에 접근권한이 있는 자가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데이터 보유자에게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그 데이터를 사용·공개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행위

3) 1) 또는 2)가 개입된 사실을 알고 데이터를 취득하거나 그 취득한 데이터를 사용·공개하는 행위

4) 정당한 권한 없이 데이터의 보호를 위해 적용한 기술적 보호 조치를 회피·제거 또는 변경(이하 “무력화”라 한다)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기술·서비스·장치 또는 그 장치의 부품을 제공·수입·수출·제조·양도·대여 또는 전송하거나 이를 양도·대여하기 위하여 전시하는 행위. 다만, 기술적 보호조치의 연구·개발을 위하여 기술적 보호조치를 무력화하는 장치 또는 그 부품을 제조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타. 국내에 널리 인식되고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타인의 성명, 초상, 음성, 서명 등 그 타인을 식별할 수 있는 표지를 공정한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질서에 반하는 방법으로 자신의 영업을 위하여 무단으로 사용함으로써 타인의 경제적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

제7조제1항 및 제8조제1항 중 “카목”을 각각 “파목”으로 한다.

제15조제1항 중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또는 「저작권법」”을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저작권법」 또는 「개인정보 보호법」”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차목 및 카목”을 “차목부터 파목까지”로 한다.

제18조제3항제1호 중 “차목 및 카목”을 “차목, 카목1)부터 3)까지, 타목 및 파목”으로 한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2년 4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1호타목의 개정규정 및 제15조제2항·제18조제3항제1호의 개정규정 중 제2조제1호타목에 관한 부분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상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2조제2항 중 “제2조제1호차목”을 “제2조제1호파목”으로 한다.

##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p> <p>1. “부정경쟁 행위”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p> <p>가. ~ 차. (생략)</p> <p><u>&lt;신설&gt;</u></p>	<p>제2조(정의) ----- -----.</p> <p>1. ----- ----- -----.</p> <p>가. ~ 차. (개정안과 같음)</p> <p>카. 데이터(「<u>데이터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 본법</u>」 제2조제1호에 따른 <u>데이터 중 업으로서 특정 인 또는 특정 다수에게 제 공되는 것으로, 전자적 방 법으로 상당량 축적·관리 되고 있으며, 비밀로서 관 리되고 있지 않은 기술상 또는 영업상의 정보를 말 한다. 이하 같다)를 부정하 게 사용하는 행위로서 다 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 는 행위</u></p> <p>1) <u>접근권한이 없는 자가 절취·기망·부정접속, 그 밖의 부정한 수단으</u></p>



로 데이터를 취득하거나  
그 취득한 데이터를 사  
용·공개하는 행위

2) 데이터 보유자와의 계  
약관계 등에 따라 데이  
터에 접근권한이 있는  
자가 부정한 이익을 얻  
거나 데이터 보유자에게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그 데이터를 사용·공개  
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  
하는 행위

3) 1) 또는 2)가 개입된 사  
실을 알고 데이터를 취  
득하거나 그 취득한 데  
이터를 사용·공개하는  
행위

4) 정당한 권한 없이 데이  
터의 보호를 위해 적용  
한 기술적 보호조치를  
회피·제거 또는 변경(이  
하 “무력화”라 한다)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  
는 기술·서비스·장치  
또는 그 장치의 부품을  
제공·수입·수출·제조

<신 설>

카. (생략)

2. ~ 4. (생략)

제7조(부정경쟁행위 등의 조사 등) ① 특허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

·양도·대여 또는 전송 하거나 이를 양도·대여 하기 위하여 전시하는 행위. 다만, 기술적 보호 조치의 연구·개발을 위하여 기술적 보호조치를 무력화하는 장치 또는 그 부품을 제조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타. 국내에 널리 인식되고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타인의 성명, 초상, 음성, 서명 등 그 타인을 식별할 수 있는 표지를 공정한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질서에 반하는 방법으로 자신의 영업을 위하여 무단으로 사용함으로써 타인의 경제적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

파. (현행 카목과 같음)

2. ~ 4. (개정안과 같음)

제7조(부정경쟁행위 등의 조사 등) ① -----  
-----  
-----



②·③ (생략)

제1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특허법」, 「실용신안법」,  
「디자인보호법」, 「상표법」,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또는  
「저작권법」에 제2조부터 제6

조까지 및 제18조제3항과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 법에 따른다.

②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표시·광고의 공  
정화에 관한 법률」, 「하도급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또  
는 「형법」 중 국가·국장에  
관한 규정에 제2조제1호라목부  
터 바목까지, 차목 및 카목, 제  
3조부터 제6조까지 및 제18조  
제3항과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 법에 따른다.

제18조(벌칙) ①·② (생략)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  
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에 처한다.

1. 제2조제1호(아목, 차목 및  
카목은 제외한다)에 따른 부

②·③ (현행과 같음)

제1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  
-----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저  
작권법」 또는 「개인정보 보  
호법」-----

② -----  
-----  
-----  
-----  
-----  
-----  
----- 차목부터 파목까지-----

제18조(벌칙) ①·② (개정안과  
같음)

③ -----  
-----  
-----

1. ----- 차목, 카목  
1)부터 3)까지, 타목 및 파목

<p>정경쟁행위를 한 자</p> <p>2. (생략)</p> <p>④·⑤ (생략)</p>	<p>-----</p> <p>2. (개정안과 같음)</p> <p>④·⑤ (개정안과 같음)</p>
--	---